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 중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종묘배양장, 온실 및 스마트농업 재배시설”로 하고, 같은 란 라) 본문 중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종묘배양장, 온실 및 스마트농업 재배시설”로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방식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환경제어설비, 관수·양액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시설의 형태·구조 및 설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지상 1층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 바닥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에 직접 필요한 관리실, 기계실, 자재보관실은 시설 내부에 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바닥면적에 포함한다)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바닥의 불투수성 포장 면적은 시설 바닥면적의 100분의 1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시설 외부에 축열조, 히트펌프 실외기,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에 따른 시설 바닥면적과 별도로 시설 외부 부지에 바닥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45